

## 7. 土地去來許可區域 및 申告區域 指定

資料提供：建設部 土地政策課

- 건설부는 '93년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1년간 신고구역으로 지정하였던 서울특별시 종로구등 49구 37시 92군 36,045km<sup>2</sup>가 11.23자로 만료됨에 따라
  - 대상지역중 개발사업예정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높은 충남 보령군 천북면 등 11개 읍·면·동 329.8km<sup>2</sup>을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·운영하고
  - 나머지 35,715.2km<sup>2</sup>는 최근의 경기회복과 지가하락추세 둔화등을 감안하여 5년간 신고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하였음.
- 아울러 개발사업예정지역으로서 최근 거래가 증가한 충북 단양군 영춘면 183.9km<sup>2</sup>를 5년간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신규지정키로 하였음.

- 금번 재지정 검토대상은 '93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3개월간 전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하였다가 다시 신고구역으로 원상회복시킨 서울특별시 종로구등 49구 37시 92군 36,045km<sup>2</sup>로서 전국토의 36.3%, 전체 신고구역의 98.2%에 해당하는 지역임.
- 동지역에 대한 재지정여부를 검토한 결과
  - 개발사업예정지로서 '94년중 거래가 급증하였거나 향후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큰 충남 보령군 천북면 등 11개 읍·면·동 329.8km<sup>2</sup>는 3년간('94.11.24~'97.11.23)허가구역으로 변경지정·관리하고

허가구역 변경지정	면적	지정사유
계	329.8km <sup>2</sup>	
전북 옥구군 옥산면·임피면·개정면	29.3km <sup>2</sup>	관광지 및 공단조성으로 거래증가지역
충남 보령군 천북면	41.4km <sup>2</sup>	
전북 완주군 동상면	99.8km <sup>2</sup>	공단 및 배후도시건설등으로 향후 투기발생우려 지역
전남 순천시 인안동·용수동·석현동 ·연향동의 녹지지역	34.2km <sup>2</sup>	
여천시 화치동	3.3km <sup>2</sup>	
장흥군 유치면	121.8km <sup>2</sup>	

-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49구 37시 92군 35,715.2km<sup>2</sup>에 대하여는 대부분 신고구역 지정 당시의 투기적 거래요인이 지속되고 있고, 해당 지자체장들도 재지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5년간('94.11.24~'99.11.23)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하였음.

- 최근의 경기회복과 토지관련 규제완화에 따른 지가하락의 둔화추세를 감안하여 당분간 종전대로 재지정함.

신고구역 재지정	면적	지정사유
서울시 종로구 등 49구 37시 92군	35,715.2km <sup>2</sup>	투기우려요인의 지속

- 또한 관광지조성 등 개발사업예정지구로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충북 단양군 영춘면 183.9km<sup>2</sup>를 향후 5년간('94.11.24~'99.11.23)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신규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였음.

신고구역 신규지정(추가)	면적	지정사유
충북 단양군 영춘면	183.9km <sup>2</sup>	관광지개발지구 및 거래증가지역

-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7,753.5km<sup>2</sup>, 신고구역은 36,553km<sup>2</sup>로 변경됨.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허가구역	37,423.7km <sup>2</sup> 〈전 국토의 37.7%〉	37,753.5km <sup>2</sup> (증 329.8) 〈전 국토의 38.0%〉
신고구역	36,698.9km <sup>2</sup> 〈전 국토의 37.0%〉	36,553km <sup>2</sup> (감 145.9) 〈전 국토의 36.9%〉

- 건설부는 앞으로도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개발사업지역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
- 엄격한 실수요자심사와 매년 정기적인 사후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지결정 및 과태료부과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.

**장인훈을 현장에 한국훈을 세계에**